

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5,000원”을 “20,000원”으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일비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 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<u>5, 000</u> 을 지급할 수 있다.		제3조(일비) ① <u>20,000원</u>

서산군읍.면개발자문위원회조 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읍.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조에
제9조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읍.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10.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관한 사항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
행한다.
- ② (폐지규정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군
읍.면종합복지회관운영규정(1988. 7. 1 훈령
제169호)은 이를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심의사항) (생략) 1 ~ 8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9. (생략)</p>	<p>제2조 (심의사항) (현행과 같음) 1 ~ 8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읍·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10.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관한 사항</p> <p>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

서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서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중 “새마을과장”을 “사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목중 “(시행세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며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위원의 수당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